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사유

○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(안 제3조)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→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○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명을 정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 및 의견

○ 행안부에서는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징수·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을 제정(시행 2017. 3. 28.)하였고,

- 법 제정에 따라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에 명시되었던 도에서 시·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관련 규정도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으로 옮겨짐.

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제24조(특별시세·광역시세·도세 징수의 위임 등)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(시·군·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·군·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)은 100분의 3으로 한다.

- 안 제3조는, 징수교부금의 교부율 관련 규정이 기존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으로 옮겨짐에 따라, 해당 인용 법령 명을 정정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징수교부금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충청북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·군에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3조(징수교부금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 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